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1

발의연월일: 2016년 11월 16일

발 의 자 : 이상묵·김인제·김미경

박기열·김선갑·김동욱 김기대·송재형·문형주

장우유·박마루·우미경 의워

(12명)

1. 제안이유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의원의 교육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수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교육연수과정의 세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등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신설).
- 나.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 다. 의원의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 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6조 신설).
- 라. 의원의 교육연수에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7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기타 사항: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
 - 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 4.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 5. 교육연수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 시행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 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7조(교육연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
 - 4.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위촉하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화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u>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교육연수위원회), 제8조(예산지원)
 - 교육연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시 비용발생
 - ※ 의원 교육연수활동사업은 서울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천원)

단위사업	2015년예산	2016년예산	증감
의회운영 지원 - 사무관리비(의정역량강화 교육)	2,000	4,000	2,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총 소요예산 : 28,800천원

(단위: 천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8,800	5,760	5,760	5,760	5,760	5,760

- 비용추계 전제

- ▶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안 제7조 제2항)하되 수당 지급대상 위원을 8명(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전제
- 위원회 회의 개최 회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용산출이 곤란하나, 위원회 회의 개최 통상
 의 예(연4회)를 들어 비용을 산출
- 산출금액 : 5,760천원

→ 수당: 150,000원×8명×4회 = 4,800천원

▶ 업무추진경비 : 30,000원×8명×4회 = 960천원

- ※ 서울특별시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p153)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p134)참조
-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2시간 이내), 초과 50,000원
- 업무추진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집(p21) 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1(음식물 가액범위 : 3만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예산분석팀장 이철희

분석관(주무관) 송경수 ® 02-3705-1276/e-mail: kssong1@seoul.go.kr